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12호

「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9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「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개정이유

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의 긴급신고 접수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옥외광고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14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화번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